

법관대표회의, '권역법관 제도' 시행 건의

- 법관 전보인사의 최소화, 법관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
- 사법행정권 중앙집중 막고, 내실 있는 재판 기대 가능



법무뉴스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의 각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권역법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공식 건의했다. 법관 전보인사의 최소화를 통해 사법행정권의 중앙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내실 있는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좋은 재판과 법관 전보인사/권역법관 제도'를 의결했으며, 법원 내부 계시관(코트넷) 공개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에서 “법관의 전보인사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건의했다.

대표회의는 “법관의 전보인사는 좋은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보인사 기준은 사전에 공개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법관 인사가 “수직적·일방적·밀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이어 “대법원은 장기근무제도를 통해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사법행정권의 중앙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게 된다.”며 “좋은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법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뒤 ‘향관’으로 불려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경향신문)

법무매거진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권고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9차 권고안 발표

I. 개요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018. 4. 5.(목)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 2. 26.부터 4. 2.까지 4차례 걸친 논의 끝에 본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 (2) 위원회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되었음에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하여 직급이 사실상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검사장’ 제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위원회는 ‘검사장급 검사’ 운용과 관련하여,

- (1)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의 관행이 시정되어야 하고,
- (2) 향후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3. 또한 ‘검사장급 검사’ 처우와 관련하여,

- (1) 전용차량 운용 등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에 대해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 (2)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하여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II.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1. 권고배경

- (1) 2004. 1. 20.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되었으나, ‘검사장’ 승진과 관련하여 ‘검사장’ 직급이 사실상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¹⁾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고위직 검사들의 보직군을 따로 두고 이들을 이른바 ‘검사장급 검사’로 칭하고 있음. 검사의 인사 발표에서 ‘검사장급’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으며, 검찰 조직에서도 검찰총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로 이어지는 조직 내 서열을 당연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됨으로써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온존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 또한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대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대우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의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²⁾보다 넓다.

- 이러한 전용차량 제공에 대하여는 그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전용차량 제공 여부를 직무수행상의 필요성 여부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장' 제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 권고 사항

- (1)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한다.

- 2004년도에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사장' 직급이 폐지되었는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사장' 인사를 직급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다.

- 향후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찰청법 취지를 그대로 살려, 직급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등 검찰 조직 및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2) 종래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전용차량 운용 및 집무실에 관련된 기준과 지침을 재정립하여, 법과 원칙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하여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임. 「정부청사관리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관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무실 기준면적(부속실 또는 비서실 포함)은 99㎡임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내려놓는다

법조인 동정



〈헌법재판소 전경〉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있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내려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중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부터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그중에서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권을 행사한다.

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일반 법관 1명,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후보자 천거에 동의한 위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재판관이 지켜야 할 업무 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인용)